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취수부담금과 이를 재원으로 하는 유역관리기금 신설 〉
■ 허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931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취수부담금과 이를 재원으로 하는 유역관리기금 신설	3
IV . 참고자료	15
1. 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요 및 현황	15
2. 수계관리기금과 유역관리기금(안) 비교	25

I. 제안경위

2024년 8월 19일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상수원을 관리하고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도 사용자로부터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각 수계별로 물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이러한 물이용부담금은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자원 생산에 따른 피해와 편익은 각각 특정 지역에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예를 들어 수자원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일부 물이용 부담금을 부담하더라도 생활·공업용수 등 물 공급의 편익이 발생함. 그 반면에 수자원시설을 보유하는 지자체의 경우 수원보호를 위한 수자원시설 주변 개발·행위제한, 지방하천·소하천 관리비용 부담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재정에 상당한 피해를 동반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각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댐·수도·하천·지하수 등 수자원과 수자원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해당 구역의 수자원 관리를 위한 재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자원 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에게 그 사용량에 비례한 취수부담금을 부과하여 유역별 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역관리기금’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물 이용과 관리 부담의 편익과 피해의 부담에 대한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31조의2·제31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9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취수부담금과 이를 재원으로 하는 유역관리기금 신설

개정안은 상수원에서 취수한 원수 등 수자원의 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에게 시·도지사가 그 사용량에 비례한 취수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취수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유역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유역별 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해당 유역 관계 <u>시·도지사</u> 와 물관리 업무의 경험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제23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 <u>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u> (이하 “ <u>시·도지사</u> ”라 한다)-----

2. · 3. (생 략)

④ · ⑤ (생 략)

<신 설>

<신 설>

2. · 3.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4장의2 취수부담금의 부과 ·

징수 등

제31조의2(취수부담금의 부과 ·

징수) ① 시 · 도지사는 유역
물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
자원의 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에 대하
여 그 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
(이하 “취수부담금”이라 한다)
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1.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
른 상수원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
급받는 자(공급받는 자가 수
도사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3.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
항에 따라 유수(流水)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

4.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자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
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0조에 따
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
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같은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
는 행위나 그에 준하는 행위
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수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 납부 절차,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
례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취수부담금을 제31조의
3에 따른 유역관리기금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취수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
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

<신 설>

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취수부담금이 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31조의3(유역관리기금의 설치 등) ① 유역 관계 시·도지사는 원활한 유역 물관리를 위하여 각 시·도별로 유역관리기금을 설치한다.

② 유역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취수부담금 및 가산금

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사용료·점용료 중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가. 「하천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
나.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료등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료·사용료

3.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가
출연(出捐)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4. 일시차입금(해당 연도 유역
관리기금의 수입계획 한도 내
로 한정한다)

5. 유역관리기금의 운용으로 생
기는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수입금

③ 유역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
여야 한다.

1. 유역별 물환경 보전 및 관
리, 복원

2. 수자원의 개발·보전과 공급
· 이용·배분

3.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
방

4. 수자원시설의 설치·관리

5. 그 밖에 지속가능한 유역 물

	<u>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u> ④ <u>환경부장관은 유역 물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역관리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u> ⑤ <u>그 밖에 유역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u>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수계법¹⁾에서는 4대강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수변구역 등 입지규제 도입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을²⁾³⁾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수계관리기금을 조성⁴⁾하여 수질개선을

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물이용부담금은 상류지역의 규제를 통해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의 물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서,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는 상류지역의 지원과 개별 수계의 물관리와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는 하류 등 최종수요지역에서 부담하는 재원임.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제19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요]

- **(기금목적)**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계관리위원회*에 설치
 - * (구성) 환경부차관(위원장), 수자원국장, 관계 시·도 부단체장, 수공사장 등
- **(근거)** 물이용부담금, 수계관리기금은 4개의 수계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
- **(재원)⁵⁾** 주요 재원은 물이용부담금으로, 4대강수계 공공수역에서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징수
 - ※ (기금규모) 한강 6,651억원(물이용부담금 77.3%), 낙동강 2,794억원(물이용부담금 95.9%), 금강 1,888억원(물이용부담금 69.9%), 영·섬 1,613억원(물이용부담금 60.1%)
- **(기금의 주요 용도)⁶⁾**
 - ①주민지원사업, ②상수원 상류지역 수질개선사업(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등) 및 ③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사업(가뭄·홍수 등 물관련 재해 대응, 수돗물 수질오염 등 사고대응) 등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금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 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물이용부담금
 2.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토지등의 매도금액
 3. 국가 외의 자가 출연(出捐)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4. 일시차입금(해당 연도 물이용부담금의 수입계획 한도 내로 한정한다)
 5. 기금운용수익금
- 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주요 내용 발췌)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 보상
 - 1의2.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 1의3.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이상을 유지하는 지역의 수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주민지원사업
 3. 제12조의2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지설의 운영 지원
 6.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그러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수계관리법에서 물이용부담금 징수 근거 및 수계관리기금 운용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댐·보 등 수자원시설이 위치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물이용부담금을 일부 부담하고 생활·공업용수 등 물을 공급받고 이용할 수 있는데 반해, 댐·보 등이 위치한 지자체의 경우 수원보호를 위하여 보호구역 주변 개발·행위 제한, 지방하천·소하천 관리비용 부담 등의 제한을 받고 있는 바, 그 부담 완화를 위해 재원을 마련하여 수자원시설 등이 위치한 지자체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상수원에서 취수한 원수·하천수·유수·지하수 등 수자원의 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에게 시·도지사 그 사용량에 비례한 취수부담금⁷⁾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취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유역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유역별 물관리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7) [취수부담금(안) 제도 개요]

구분	상세 내용
징수대상	▶ 상수원에서 취수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수도사업자 제외) ▶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소하천에서 유수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거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에 한정)
산정방법 등	▶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납부 절차 등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함
납부처	▶ 유역관리기금에 납부
가산금	▶ 납부기한 초과시 부담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 징수 가능
징수방법	▶ 취수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유역관리기금(안) 제도 개요(안 제31조의3)]

구분	상세 내용
재원(제2항)	▶ 취수부담금 및 가산금 ▶ 사용료·점용료* 중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 하천수 사용료, 소하천 점용료,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등 ▶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 ▶ 일시차입금 ▶ 유역관리기금 운용 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용도(제3항)	▶ 유역별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 ▶ 수자원의 개발·보전과 공급·이용·배분 ▶ 가뭄·홍수 등 물재해의 경감 및 예방 ▶ 수자원시설의 설치·관리 ▶ 지속가능한 유역 물관리를 위하여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
출연의무(제4항)	▶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역관리기금에 출연 필요
운용·관리(제4항)	▶ 유역관리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함

수자원 사용량에 비례한 취수부담금을 부과하여 지역 간 물 이용 피해·편익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유역관리기금을 신설하여 개발 제한 등 행위 제한을 받고있는 지자체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환경부는 현행법이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바⁸⁾, 개정안과 같이 취수부담금의 부과·징수 관련 세부규정 및 유역관리기금 운용 관련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임⁹⁾.

8) 물관리의 기본원칙(제8조~제19조),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제20조~제26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변경(제27조~제31조) 등 명시.

둘째, 수계법 개정으로 수계관리기금의 목적이 물관리로 확대¹⁰⁾되었고, 기금으로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 먹는물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등 물관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유역관리기금의 용도와 수계관리기금의 용도가 중복되며(참고자료 2),

하나의 부과 대상¹¹⁾에 물이용부담금과 취수부담금이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¹²⁾에 반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환경부의 의견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해 보임.

9) 현재도 물이용부담금, 수계관리기금에 관한 규정은 현행법이 아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수계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658호, 2023. 7. 2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657호, 2023. 7. 2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664호, 2023. 7. 27). 한강 수계법은 미개정

11) 예를들어, 현재 「수도법」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자, 「하천법」에 따른 하천수 사용자 등은 이미 기존 4대강 수계법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개발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수계관리기금과 유사한 목적·용도의 취수부담금도 납부하게 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12)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 원칙) ① 부담금은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 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물이용부담금, 취수부담금(안) 비교]

구분	물이용부담금(4대강 수계법 근거)	취수부담금(신설)
징수목적	▶ 상류지역의 주민지원 및 수질 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원 조성	▶ 유역물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성
징수주체	▶ 수도사업자	▶ 광역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가산금	▶ 3%(지자체 급수조례)	▶ 1%
부과금	▶ 물사용량(취수량) × 부과요율(170원/톤)	▶ 물사용량 × 부과요율(시·도 조례)
징수대상	▶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u>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u> ▶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u>하천수의 사용자</u>	▶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에서 취수한 <u>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자</u>(수도사업자 제외) ▶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u>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u>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수(流水)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 ▶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자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
용도	▶ 주민지원사업 ▶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 오염총량관리사업 ▶ 기타 수질개선사업 ▶ 친환경 청정지원사업(한강수계만 해당) ▶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 - 가뭄·홍수 등 물재해 대응 사업 - 수돗물 수질오염 등 사고 대응 사업	▶ 물환경 보전 및 관리·복원 ▶ 수자원의 개발·보전과 공급·이용·배분 ▶ 물재해의 경감 및 예방 ▶ 수자원시설의 설치·관리 ▶ 그 밖에 지속가능한 유역 물관리를 위해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

셋째,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취수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부과요율을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위임(안 제32조의2제2항)한 것은 부과요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¹³⁾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해양수산부는 개정안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취수부담금을 징수(안 제31조의2제1항제5호)하는 경우 유역물관리와 실질적으로 관련 없는 온배수, 염전, 수족관 등 해수 이용행위도 동 부담금의 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관계 부처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의견¹⁴⁾까지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29호, 허영 의원 대표발의)에 취수부담금 신설에 관한 내용이 규정¹⁵⁾되어 있어, 동 법률안의 심사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47

13)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에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4)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등에서 ‘취수부담금’ 부과대상은 현행 물이용 부담금 및 지하수이용부담금과 중복되어 ‘이중부과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 제시

1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9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7. 「물관리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취수부담금

※ 참고자료 1: 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요 및 현황¹⁶⁾

1 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① 목적	▶ 상류지역 규제로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물사용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상류지역 주민 및 수질개선사업 등을 지원 * 공공수역에서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 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부과요율 : 170원/톤)												
② 체계	▶ '02년(한강수계 '99년)부터 4대강 수계법*에 따라 4대강별로 수계관리기금을 운용 중 * ①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②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③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④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모든 결정 및 의결사항은 사전에 상·하류 지자체의 우선 합의 이후에 수계실무위, 수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③ 재원	▶ 물이용부담금, 매수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토지 등의 매도금액,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일시차입금 등 * '24년 물이용부담금이 76.2% (한강 74.1%, 낙동강 94.0% 금강 72.2% 영산강 61.3%)												
④ 규모 (‘24년)	(단위 : 억원) <table><tr><th>수계별</th><th>총계</th><th>한강</th><th>낙동강</th><th>금강</th><th>영산강</th></tr><tr><td>기금 규모</td><td>12,946</td><td>6,651</td><td>2,794</td><td>1,888</td><td>1,613</td></tr></table>	수계별	총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기금 규모	12,946	6,651	2,794	1,888	1,613
수계별	총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기금 규모	12,946	6,651	2,794	1,888	1,613								
⑤ 기금 용도	▶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오염총량관리사업, 기타 수질개선사업 등 ▶ 친환경 청정지원사업*(한강수계만 해당) * 친환경기술개발, 친환경농업, 친환경생산,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사전예방 사업 등												

16) 자료: 환경부

② `24년도 수계관리기금 세부 현황

① 세입

(단위 : 백만원)

구분	총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합계	1,294,528	665,062	279,366	188,779	161,321
물이용부담금	1,010,581	513,781	267,980	131,920	96,900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등	54,019	32,836	10,386	6,018	4,779
여유자금회수	229,928	118,445	1,000	50,841	59,642

② 지출

(단위 : 백만원)

구분	총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합계	1,294,528	665,062	279,366	188,779	161,321
주민지원사업	146,240	81,884	21,561	23,528	19,267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495,558	272,260	142,944	61,864	18,490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206,601	99,442	39,035	28,225	39,899
오염총량관리	25,486	9,385	6,417	5,349	4,335
기타수질개선지원	79,421	44,771	17,483	10,119	7,048
친환경청정사업	28,275	28,275	-	-	-
기금운영비	17,645	9,278	3,753	2,584	2,030
여유자금운용	295,302	119,767	48,173	57,110	70,252

③ 주요사업 세부내용

주요사업명	세 부 내 용							
① 주민지원사업	▶ (목적)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토지 및 행위제한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상류 주민에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정을 지원 ▶ (내용) 일반지원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 <table> <tr> <th>구 분</th><th>내 용</th></tr> <tr> <td rowspan="2">일반지원 사업비</td><td>간접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td></tr> <tr> <td>직접지원사업 공공요금 납부지원, 주거생활 편의지원 등 가구별 지원</td></tr> <tr> <td>특별지원 사업비</td><td>주민지원사업비 30%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td></tr> </table>	구 분	내 용	일반지원 사업비	간접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직접지원사업 공공요금 납부지원, 주거생활 편의지원 등 가구별 지원	특별지원 사업비	주민지원사업비 30%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구 분	내 용							
일반지원 사업비	간접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직접지원사업 공공요금 납부지원, 주거생활 편의지원 등 가구별 지원							
특별지원 사업비	주민지원사업비 30%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②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 (목적) 재정이 열악한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지원을 통해 수질 개선 도모 ▶ (내용)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 일정비율을 지원 <table> <tr> <th>구 분</th><th>내 용</th></tr> <tr> <td>환경기초 시설설치</td><td>상류지역에 국고가 지원되는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의 지방비 부담분 중 일정비율을 기금에서 지원</td></tr> <tr> <td>환경기초 시설운영</td><td>상류지역에 운영중인 하수처리장, 소규모하수도, 분뇨처리 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의 운영비 중 일정비율을 기금 에서 지원</td></tr> </table>	구 분	내 용	환경기초 시설설치	상류지역에 국고가 지원되는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의 지방비 부담분 중 일정비율을 기금에서 지원	환경기초 시설운영	상류지역에 운영중인 하수처리장, 소규모하수도, 분뇨처리 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의 운영비 중 일정비율을 기금 에서 지원	
구 분	내 용							
환경기초 시설설치	상류지역에 국고가 지원되는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의 지방비 부담분 중 일정비율을 기금에서 지원							
환경기초 시설운영	상류지역에 운영중인 하수처리장, 소규모하수도, 분뇨처리 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의 운영비 중 일정비율을 기금 에서 지원							
③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조성	▶ (목적)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토지를 매수하여 오염원 입지를 사전 차단하고, 입지규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문제를 해소 ▶ (내용)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 등의 매수와 매수한 토지에 녹지를 조성하는 녹지조성관리로 구성됨							

주요사업명	세 부 내 용														
④ 기타수질개선	▶ (목적) 민간단체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여 상수원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환경 관리능력 증대 및 수질개선사업 참여 유도 ▶ (내용) 4대강 공통으로 추진하는 수질보전활동 등 4개 사업 및 각 수계별 사업으로 구성됨 - 4대강 공통 <table><tr><th>구 분</th><th>내 용</th></tr><tr><td>상수원관리 지역관리</td><td>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의 관리 소요 비용 지원, 상수원의 수중 쓰레기 수거, 상수원 상류의 중소유역 수질개선사업 등</td></tr><tr><td>환경기초 조사연구</td><td>수질·오염원·오염부하량 등 수계환경 기초 정보의 과학적 조사·연구사업 및 DB화 사업, 수질개선 오염방지기술 개발사업 등</td></tr><tr><td>수질보전 활동지원</td><td>4대강 수계의 민간단체 환경보전운동 지원</td></tr><tr><td>비점오염 저감사업</td><td>비점오염원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td></tr></table> - 한강, 낙동강 <table><tr><th>구 분</th><th>내 용</th></tr><tr><td>장수비용지원</td><td>원수 수질 악화시 고도정수처리비용 일부 지원 - (한강) 조류경보 발령 또는 수질 악화시 - (낙동강) 원수의 BOD 수질이 3ppm 이상 및 조류 발생으로 TOC 등 미량유해영향유기물질 기준초과시</td></tr></table>	구 분	내 용	상수원관리 지역관리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의 관리 소요 비용 지원, 상수원의 수중 쓰레기 수거, 상수원 상류의 중소유역 수질개선사업 등	환경기초 조사연구	수질·오염원·오염부하량 등 수계환경 기초 정보의 과학적 조사·연구사업 및 DB화 사업, 수질개선 오염방지기술 개발사업 등	수질보전 활동지원	4대강 수계의 민간단체 환경보전운동 지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구 분	내 용	장수비용지원	원수 수질 악화시 고도정수처리비용 일부 지원 - (한강) 조류경보 발령 또는 수질 악화시 - (낙동강) 원수의 BOD 수질이 3ppm 이상 및 조류 발생으로 TOC 등 미량유해영향유기물질 기준초과시
	구 분	내 용													
	상수원관리 지역관리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의 관리 소요 비용 지원, 상수원의 수중 쓰레기 수거, 상수원 상류의 중소유역 수질개선사업 등													
	환경기초 조사연구	수질·오염원·오염부하량 등 수계환경 기초 정보의 과학적 조사·연구사업 및 DB화 사업, 수질개선 오염방지기술 개발사업 등													
	수질보전 활동지원	4대강 수계의 민간단체 환경보전운동 지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구 분	내 용														
장수비용지원	원수 수질 악화시 고도정수처리비용 일부 지원 - (한강) 조류경보 발령 또는 수질 악화시 - (낙동강) 원수의 BOD 수질이 3ppm 이상 및 조류 발생으로 TOC 등 미량유해영향유기물질 기준초과시														
⑤ 오염총량관리	▶ (목적) 오염총량관리제도 정상 시행을 위한 지원 ▶ (내용)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 지자체를 지원하는 오염총량 관리사업과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으로 구성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오염총량 관리</td><td>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시행하는 시·군에 이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td></tr><tr><td>오염총량 관리조사·연구</td><td>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 운영 및 수계전역에 대한 수질·유량 등에 조사·연구</td></tr></table>	구분	내용	오염총량 관리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시행하는 시·군에 이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	오염총량 관리조사·연구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 운영 및 수계전역에 대한 수질·유량 등에 조사·연구								
	구분	내용													
	오염총량 관리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시행하는 시·군에 이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													
	오염총량 관리조사·연구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 운영 및 수계전역에 대한 수질·유량 등에 조사·연구													

④ 수계관리위원회

구 분	내 용																			
① 법적성격	▶ 수질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 ▶ 수계위에서 모든 의사 결정(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수계위 심의) ▶ 수계법*에 근거하여 별도 정관 없음 * 한강법 제24조, 낙동강법 제37조, 금강법 제35조, 영산강·섬진강법 제35조																			
② 주요기능	▶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법으로 규정된 아래 사항 협의·조정 -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수립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 기금의 운용·관리 - 하천유지용수(河川維持用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토지등의 매수,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질보전 또는 수질감시활동 지원																			
③ 구성운영	▶ (공통위원) 환경부 차관(위원장)·수자원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수계별 위원) 수계별 지자체·유관 기관으로 구성 - 실무위원회(안전상정 및 사전검토) 및 자문위원회(주요안전 자문) 별도 운영,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국은 유역청(유역관리국) 직원이 겸임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 구성> <table><tr><th rowspan="2">수계별</th><th colspan="2">위원 현황 (중앙정부 국장급, 지자체 부(지사)시장, 공사 이사장)</th><th rowspan="2">비고 (설치근거)</th></tr><tr><th>공통</th><th>개별</th></tr><tr><td>한강 (9명)</td><td rowspan="4">환경부 차관(위원장), 환경부 수자원관리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td><td>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 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한수원)</td><td>한강법 제24조</td></tr><tr><td>낙동강 (10명)</td><td>산림청 국장,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경북도, 경남도, 강원도</td><td>낙동강법 제37조</td></tr><tr><td>금강 (10명)</td><td>산림청 국장, 대전시, 충청도, 충남도, 전북도, 세종시, 농어촌공사 사장</td><td>금강법 제35조</td></tr><tr><td>영산강 (8명)</td><td>산림청 국장, 광주시, 전북도, 전남도, 농어촌공사 사장</td><td>영산강·섬진강법 제35조</td></tr></table>	수계별	위원 현황 (중앙정부 국장급, 지자체 부(지사)시장, 공사 이사장)		비고 (설치근거)	공통	개별	한강 (9명)	환경부 차관(위원장), 환경부 수자원관리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 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한수원)	한강법 제24조	낙동강 (10명)	산림청 국장,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경북도, 경남도, 강원도	낙동강법 제37조	금강 (10명)	산림청 국장, 대전시, 충청도, 충남도, 전북도, 세종시, 농어촌공사 사장	금강법 제35조	영산강 (8명)	산림청 국장, 광주시, 전북도, 전남도, 농어촌공사 사장	영산강·섬진강법 제35조
수계별	위원 현황 (중앙정부 국장급, 지자체 부(지사)시장, 공사 이사장)		비고 (설치근거)																	
	공통	개별																		
한강 (9명)	환경부 차관(위원장), 환경부 수자원관리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 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한수원)	한강법 제24조																	
낙동강 (10명)		산림청 국장,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경북도, 경남도, 강원도	낙동강법 제37조																	
금강 (10명)		산림청 국장, 대전시, 충청도, 충남도, 전북도, 세종시, 농어촌공사 사장	금강법 제35조																	
영산강 (8명)		산림청 국장, 광주시, 전북도, 전남도, 농어촌공사 사장	영산강·섬진강법 제35조																	

5 물이용부담금 개요

구분	내용																																				
① 기본개념	▶ 상류지역 규제로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물사용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상류지역 주민 및 수질개선사업 등을 지원																																				
② 부과대상	▶ 공공수역에서 취수된 원수·정수를 공급받는 최종수요자 ▶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 ▶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자																																				
③ 면제대상	▶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 측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발전사업자가 하천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④ 부과·징수 방법	▶ (부과금 산정) - 물사용량(취수량) × 부과요율(170원/톤) ▶ (부과 방법) - 지자체에서 수도요금 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징수 후 수계위 납입 - 전용수도 설치자·하천수 사용자 : 수계위에서 부과·징수																																				
⑤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table><tr><th></th><th>2019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r><tr><td>합 계</td><td>924,272</td><td>899,818</td><td>918,670</td><td>921,969</td><td>931,547</td></tr><tr><td>한 강</td><td>476,519</td><td>470,943</td><td>476,342</td><td>473,639</td><td>478,841</td></tr><tr><td>낙동강</td><td>238,887</td><td>221,991</td><td>222,768</td><td>226,987</td><td>234,932</td></tr><tr><td>금 강</td><td>121,860</td><td>120,206</td><td>127,157</td><td>127,682</td><td>127,458</td></tr><tr><td>영산강</td><td>87,006</td><td>86,678</td><td>92,403</td><td>93,661</td><td>90,316</td></tr></table>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924,272	899,818	918,670	921,969	931,547	한 강	476,519	470,943	476,342	473,639	478,841	낙동강	238,887	221,991	222,768	226,987	234,932	금 강	121,860	120,206	127,157	127,682	127,458	영산강	87,006	86,678	92,403	93,661	90,316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924,272	899,818	918,670	921,969	931,547																																
한 강	476,519	470,943	476,342	473,639	478,841																																
낙동강	238,887	221,991	222,768	226,987	234,932																																
금 강	121,860	120,206	127,157	127,682	127,458																																
영산강	87,006	86,678	92,403	93,661	90,316																																

6 물이용부담금 부과 및 지원 대상(지역)

① 한강수계관리기금

구분		내용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지역)	계(69)	60개 시·군·구, 전용수도설치자 1, 하천수사용자 7, 수자원공사 1
	서울특별시 (25구)	전역
	인천광역시 (8구 2군)	전역(강화, 옹진일부 제외)
	경기도 (25개 시)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김포시, 안성시, 화성시, 양주시, 동두천시, 파주시(일부), 포천시(일부)
	전용수도(1) 및 하천수 사용자(7)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자(1개소),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자(7개소)
	수자원공사(1)	한국수자원공사
기금사업비 지원대상(지역)	계(43)	1특별시, 4개 도, 39개 시·군·구
	서울특별시(4)	서울특별시,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경기도(12)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광주시, 여주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강원도(15)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충청북도(8)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음성군, 단양군, 괴산군
	경상북도(4)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영주시

②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구분		내용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지역)	계(59)	3개 광역시, 28개 시·군, 전용수도설치자 11, 하천수사용자 16, 수자원공사 1
	광역시(3)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14)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영천시, 포항시,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청도군, 칠곡군, 의성군, 군위군
	경상남도(14)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창원시, 통영시, 고성군, 남해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의령군
	전용수도(11) 및 하천수 사용자(16)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자(11개소),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자(16개소)
	수자원공사(1)	한국수자원공사
기금사업비 지원대상(지역)	계(50)	3개 광역시, 3개 도, 43개 시·군, 수자원공사 1
	광역시(4)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강원도(2)	강원도, 태백시
	경상북도(23)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포항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양군, 예천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울진군, 영덕군
	경상남도(19)	경상남도,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전라북도(1)	남원시
	수자원공사(1)	한국수자원공사

③ 금강수계관리기금

구분		내용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지역)	계(36)	1개 광역시, 1개 특별자치시, 21개 시·군, 전용수도설치자 6, 하천수사용자 5, 산단 1, 수자원공사 1
	광역시(1)	대전광역시
	특별자치시(1)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1)	청주시
	충청남도(15)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예산군, 청양군, 서산시, 홍성군, 보령시, 태안군
	전라북도(6)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완주산단
	전용수도(6) 및 하천수 사용자(5)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자(6개소),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자(5개소)
	기타(2)	한국수자원공사, 완주산업단지
기금사업비 지원대상(지역)	계(37)	1개 광역시, 1개 특별자치시, 3개 도, 32개 시·군·구
	대전광역시(4)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서구
	특별자치시(1)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9)	충청북도, 청주시,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충청남도(9)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금산군, 청양군, 서천군
	전라북도(12)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부안군, 고창군
	경상북도(1)	상주시
	경기도(1)	안성시

④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구분		내용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지역)	계(23)	1개 광역시, 20개 시·군, 자유구역청 1, 수자원공사 1
	광역시(1)	광주광역시
	전라남도(20)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보성군, 고흥군, 화순군, 순천시, 신안군, 무안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영암군, 광양시, 장흥군, 강진군,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
	기타(2)	수자원공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기금사업비 지원대상(지역)	계(26)	1개 광역시, 2개 도, 23개 시·군
	광역시(1)	광주광역시
	전라남도(17)	전라남도, 나주시, 보성군, 화순군, 순천시, 무안군, 영암군, 광양시, 장흥군, 강진군, 담양군, 장성군, 구례군, 함평군, 곡성군, 담양군, 장성군
	전라북도(7)	전라북도, 정읍시, 장수군, 순창군, 남원시, 임실군, 진안군
	경상남도(1)	하동군

※ 참고자료 2: 수계관리기금과 유역관리기금(안) 비교¹⁷⁾

구분	수계관리기금(4대강 수계법 근거)	유역관리기금(신설)
운영 주체	▶ 수계관리위원회	▶ 광역지자체
재원	▶ 물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전체 재원 대비 77% 차지) * 공공수역에서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 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부과요율 : 170원/톤) ▶ 매수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토지 등의 매도금액 ▶ 기금 운용 수입금 ▶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 그 밖의 재산, 일시차입금 등	▶ 취수부담금 및 가산금 ▶ 하천(하천수), 소하천·공유수면 점·사용료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 기금 운용 수입금 등 ▶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출연금 등 ▶ 일시차입금
용도	▶ 주민지원사업 ▶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 오염총량관리사업 ▶ 기타 수질개선사업 ▶ 친환경 청정지원사업(한강수계) ▶ <u>가뭄·홍수 등 물재해 대응 사업</u> (개정사항) ▶ <u>먹는물 사고 대응 사업</u>(개정사항)	▶ 물환경 보전 및 관리·복원 ▶ 수자원의 개발·보전과 공급·이용·배분 ▶ 물재해의 경감 및 예방 ▶ 수자원시설의 설치·관리 ▶ 그 밖에 지속가능한 유역 물관리를 위해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

17) 자료: 환경부